

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)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별표 2에 따른 위반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와 행정처분을 받아 확정된 자를 말한다.

②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“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별표 2에 따른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기간을 말한다.

③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④ 별표 2에 따른 위반행위를 처분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형 또는 행정처분의 확정결과를 관련 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의2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정보처리장치를 관리·운영하는 자는 학교장의 입찰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8조 중 “별표와”를 “별표 1과”로 한다.

별표를 별표 1로 하며,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2조의2(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)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별표 2에 따른 위반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와 행정처분을 받아 확정된 자를 말한다.
<u><신 설></u>	②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“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별표 2에 따른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기간을 말한다.
<u><신 설></u>	③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<u><신 설></u>	④ 별표 2에 따른 위반행위를 처분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형 또는

행정처분의 확정결과를 관련 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의 2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정보처리장치를 관리·운영하는 자는 학교장의 입찰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 대상과 기간 등
적용기준(제12조의2 관련)

1. 일반기준

식재료 구매계약에 있어서 제2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 (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는 종료일)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.

2.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 대상과 기간

위반 행위	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 기간
가. 「식품위생법」을 위반한 경우(이하 이 목에서 인용하는 조문은 「식품위생법」의 해당 조문을 말한다)	
1) 제4조부터 제6조까지(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를 위반한 자	3개월
2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2항·제9조제2항·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인정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	3개월
3) 제7조제4항, 제8조, 제9조제4항, 제9조의3, 제12조의2제2항, 제17조제4항, 제31조제1항·제3항, 제39조제3항, 제48조제2항· 제10항 또는 제4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자	3개월
4) 제22조제1항(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72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검사·출입·수거·압류·폐기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	3개월
5)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	3개월
6) 제37조제1항·제3항·제4항 또는 제5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	3개월
7)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	3개월
8)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(다만,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	3개월

자는 제외한다)	
9) 제4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	3개월
10) 제4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	3개월
11)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	3개월
12)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	3개월
13) 제72조제1항·제3항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	3개월
14)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	3개월
15) 제76조제1항에 따른 제조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	3개월
16) 제7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 또는 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	3개월
17) 제86조제2항·제3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	3개월
18) 제9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제조·가공·수입 또는 조리한 자	3개월
나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을 위반한 경우 (이하 이 목에서 인용 하는 조문은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의 해당 조문을 말한다)	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	3개월
2)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·처리, 집유, 축산물의 가공·포장·보존 또는 유통을 한 자	3개월
3)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·운반 또는 진열한 자	3개월
4)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등을 사용한 자	3개월
5)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·처리한 자	3개월
6)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집유하거나 축산물을 가공, 포장 또는 보관한 자	3개월

7)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·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	3개월
8)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	3개월
9)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	3개월
10)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를 한 자	3개월
11)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	3개월
12)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축산물을 수입·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·포장·보관·운반 또는 진열한 자	3개월
13) 제16조를 위반하여 축산물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합격표시를 한 자	3개월
14) 제17조를 위반하여 미검사품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한 자	3개월
15) 제18조를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처리한 자	3개월
16) 제19조제1항·제2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검사·출입·수거·압류·폐기 조치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자	3개월
17)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	3개월
18)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 또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	3개월
19)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	3개월
20) 제22조제5항, 제24조제1항, 제26조제3항을 각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	3개월
21)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	3개월
22)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5호의2, 제5호의3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(다만,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)	3개월
23)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	3개월

24)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내역을 작성·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	3개월
25)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	3개월
26)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	3개월
27)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	3개월
28)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·가공·포장·사용·수입·보관·운반 또는 진열한 자	3개월
29) 제36조제1항·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	3개월
30) 제38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조치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자	3개월
31) 제38조제2항에 따른 게시문 또는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	3개월
32) 제4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등을 처리한 자	3개월
다.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경우 (이하 이 목에서 인용하는 조문은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의 해당 조문을 말한다)	
1)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	6개월
2)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	6개월